

대구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나7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나72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66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 선고 2020. 11. 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66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7. 7. 12. 300만 원, ② 2017. 7. 18. 100만 원, ③ 2017. 8. 25. 100만 원, ④ 2017. 9. 8. 20만 원, ⑤ 2017. 10. 19. 20만 원 합계 54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렸다(피고는 위 ①~③항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진정한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④, ⑤항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을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인정부분 외에, 원고가 ① 2017. 8. 20.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② 2017. 8. 23.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③ 2017. 9. 14. E에게 1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도 2019. 4. 11.자

준비서면에서 위 ③항의 돈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45일간 일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임 채권 900만 원(= 1일 20만 원 × 45일)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1) 을8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45일간 일을 하였으나 노임을 받지 못했고 대여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1일 일당은 20만 원이고, 피고가 9일간 일했으며, 합계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G과 현장소장 H은 2018. 9. 30.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10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불참하였다. 피고가 받아야 하는 노임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현장에서 일한 일수는 2017. 9. 21. ~ 2017. 11. 28.까지 사이에 45일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옹벽공사, 가축사육장 이전 확장신축공사, 사료 창고공사 등을 하였다.」

⑤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위 ④항의 사실확인서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짜(합계 45일)와 일한 내역 일부가 정리되어 있는 노트 사본(을11호증)을 제출하였다.

⑥ 위 진정사건은 증거 부족이라는 취지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2) 위 1)항의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27일간의 노임 합계 540만 원(= 20만 원 × 27일)의 채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위 노임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무렵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초과하는 노임을 청구하지 않은 점, 피고 스스로 위 진정사건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45일간 일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서(을10호증)와 노트 사본(을11호증)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대여금과 대등한 금액에 해당하는 27일간 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9일간의 노임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원고가 18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노무 일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노임을 모두 직불하였으므로, 노임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진정사건에서의 원고의 진술 및 G 등의 사실확인서(을10호증)에 반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G 등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에게 참석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사실확인서와 노트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노임에 대하여 주장하였음에도,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으며, 결국 위 진정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④ 원고는 당심에서 'G은 피고가 현장에서 일한 것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원고는 당시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노임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G의 사실확인서(갑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준규

판사정인섭

판사최미복